

개정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제도

10문 10답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2015.3.31)〉



인사혁신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인사혁신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Q1

취업제한대상 기관으로 고시된 15,033개의 기관·단체에 대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은 **취업이 금지된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15,033개 기관·단체로 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고,

취업심사 결과,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하였던 부서(2급 이상 공무원 등은 기관)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 취업이 제한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재직 중 처리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Q2

퇴직공직자가 취업을 제한받게 되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은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나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밀접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합니다.

- 1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과의 관계 정도
- 2 퇴직공직자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함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 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Q3

공직자윤리법 시행 후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 없이 취업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 1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취업심사 없이 모든 기관에 자유롭게 취업 가능
- 2 퇴직일부터 3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업제한대상 기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단체로의 취업은 취업심사 없이 취업 가능

Q4

고위공직자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되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과의 장 및 과 소속직원은 해당 과의 업무로, 그 상위 직위에 있는 경우는 직제, 정관, 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법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2급 이상의 공무원 등)는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확대되어 본부에 근무하던 고위공직자는 본부와 소속기관의 전체의 업무, 소속기관에 근무하던 고위공직자는 해당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퇴직공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기본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Q5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취업이 제한된다고 하는 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
- ②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 등)
- ③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 ④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규제·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⑤ 사립대학과 그 설립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그 설립법인
- ⑥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 따라서, 모든 영리사기업체, 법무법인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의 취업만 제한되는 것입니다.**

※ 취업제한대상 기관 현황(2015년 3월 31일 기준, 15,033개)

영리사기업체 13,505개, 법무법인 24개, 회계법인 28개, 세무법인 29개, 시장형 공기업 14개, 안전감독 등 공직유관단체 157개, 사립대학 및 설립법인 656개, 종합병원 및 설립법인 468개, 사회복지법인 등 152개

◦ 취업제한대상 기관 확인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pec.go.kr>)

Q6

사립대학도 취업제한대상 기관으로
추가되었는데 **순수학문 연구를 위해 일반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립대학의 교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직위에 따라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① 취업심사대상
민관 유착 가능성이 있는 총장, 부총장, 학장, 교무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 ② 심사제외대상
순수 학문적 전문성을 살려 대학의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강사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

》》 따라서, 순수 학문 연구를 위해 **일반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Q7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일 전에 퇴직한 사람도 취업제한기간 3년 등의 강화된 취업 제한제도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2015.3.31) 이후에 퇴직한 공직자부터 취업제한기간 3년, 확대된 취업제한대상 기관(대학·종합병원·시장형 공기업·안전감독 등 관련 공직유관단체·사회복지법인), 취업이력공시제도 등 강화된 취업제한제도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2015년 3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공직자는 강화된 취업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취업제한기간 2년 등 **본인이 퇴직할 당시의 공직자윤리법을 적용 받습니다.**

Q8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하려는 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공직자가 재직시 근무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을지라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통해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이 승인됩니다.

※ 취업승인 사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음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 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2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간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법 제17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함
 1.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

Q9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신청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도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는 그 절차*를 규정하면서 **공직에서 퇴직한 자를 전제로** 하고 있고, 만약에 현직자에게 심사신청을 허용할 경우에는 재직 중 업무처리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상 **현직 공무원에게는 취업심사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절차 : 취업심사대상자 → 퇴직 당시 소속기관장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Q10

모든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이 공시되는 것 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공직자의 직무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고위공직자에 한해**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이 공시되며, 그 대상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확대되는 고위공직자와 동일합니다.

- 1 재산 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등과 특정분야 공무원*

*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인 검사, 소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인 군인, 차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2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발전분야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원

》 따라서, 모든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10년간의 취업이력이 공시되는 것은 아닙니다.